

## 경운대학교 대학혁신원규정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대학교육의 혁신적 변화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경운대학교(이하 “우리대학교”라 한다) 중장기 발전계획의 실현을 위한 체제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승선학원 「정관」 제79조제3항, 제5항 및 제80조, 경운대학교 「학칙」 제5조제1항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<개정 2021.09.01.>

**제2조(기능)** ① 대학혁신원은 교육혁신본부와 미래전략본부를 둔다.

② 교육혁신본부 기능은 다음과 같다.

1. 교육혁신모델 연구 및 확산에 관한 사항
  - 가. 교육 혁신모델 개발 및 확산
  - 나. 교육 정책 및 방향수립을 위한 연구 수행
  - 다. 교육 혁신을 위한 제반사업 수주 지원
2. 역량-성과 기반 교과 및 비교과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
  - 가. 핵심역량 및 전공능력 설정을 위한 기초연구 수행
  - 나. 역량-성과기반 교육과정 운영지침 개발
  - 다. 역량-성과기반 교육과정 운영성과 분석
  - 라. 경운역량통합관리시스템 운영관리 및 개선
  - 마. K-Master인증제 운영
3. 교수-학습 모델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
  - 가. 교수-학습모델 개발 및 확산
  - 나. KW교수역량진단도구 개발 및 개선
  - 다. 학생 중심 교육 운영지원
  - 라. 대학혁신원 강좌(이하 혁신강좌) 개발 및 운영지원
4. 교육과정 환류 개선에 관한 사항
  - 가. 교육과정 사전진단 및 수요조사
  - 나. 교육과정 중간 모니터링
  - 다. 교육과정 운영성과 분석 및 만족도 조사
  - 라. 교육과정 개선방향 도출 및 기본계획 수립
  - 마. 강의개선을 위한 개선방향 도출 및 기본계획 수립
5. 대학교육 혁신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업무에 관한 사항

③ 미래전략본부 기능은 다음과 같다.

1. 대학발전계획 전략 수립 조정 및 성과관리

- 가. 발전계획의 추진 모니터링 및 조정에 관한 사항
  - 나. 발전계획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
  - 다. 대학발전 및 혁신에 필요한 주요 전략발굴 및 기획
  - 라. 대학 정원 내·외 총량의 적정 규모화에 관한 사항
2. 정부재정지원사업 운영지원
- 가. 사업단 예산 연계·조정에 관한 사항
  - 나. 사업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
3. 대학 전반의 성과 관리체계 및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
4. 기타 대학발전 및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
[전문개정 2021.09.01.]

**제2조의2(혁신강좌)** ① 교육과정 품질개선 및 다양한 교수학습방법 적용을 위해 대학혁신원에서 일부 강좌를 시범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.

<개정 2021.09.01.>

② 혁신강좌의 일부 강좌유형을 지정강좌(이하 “지정강좌”)로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. <신설 2021.09.01.>

[본조신설 2020.12.01.]

[제목개정 2021.09.01.]

**제3조(조직)** ① 대학혁신원장은 각 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.

- ② 각 본부장은 해당 본부를 운영하며 우리대학교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- ③ 교육혁신본부에는 본부장을 보좌하는 각 부장을 둘 수 있으며, 우리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21.09.01.>
- ④ 각 본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인력을 운용할 수 있다.
- ⑤ 원격교육지원센터 및 교수학습지원센터의 업무는 교육혁신본부장이 관장하며, 대학성과 관리센터(IR센터)의 업무는 미래전략본부장이 관장한다. <신설 2020.12.01., 2021.09.01.>

**제4조(보칙)**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리대학교 관련 제규정을 따른다.

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<2020.12.01.>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21.09.01.>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